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3. 2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설치 및 도·농 복합형태 시지역의 읍설치로 충청북도립학교의 위치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청주시의 구설치로 위치변경 학교

학교급별	국	중	고		특수학교	계
			고	통신고		
상 당 구	15 (1)	8	5	1	1	30 (1)
홍 덕 구	19	6	6	1		32
계	34 (1)	14	11	2	1	62 (1)

※ ()은 분교장으로 본수에 미포함.

- 도·농 복합형태 시지역의 읍설치로 위치변경 학교

지 역 별	국	중	고	계
충주시 주덕읍	2	1	1	4
제천시 봉양읍	3 (1)	1	1	5 (1)
계	5 (1)	2	2	9 (1)

※ ()은 분교장으로 본수에 미포함.

-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[별표1]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위치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흥덕구'로 변경하고, 증원도서관의 위치중 '주덕면'을 '주덕읍'으로 변경함.
-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(위치) 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흥덕구'로 변경함.
-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(위치) 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상당구'로 변경함.

□ 제안근거

-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 (청주시 조례 제1795호, 1994. 12. 30.)
- 충주시주덕읍설치에관한조례 (충주시 조례 제144호, 1995. 2. 28.)
- 제천시봉양읍설치에관한조례 (제천시 조례 제136호, 1995. 3. 2.)

□ 조 례 안 : 불 임

□ 참고자료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: 불 임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불 임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 : 불 임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: 불 임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, [별표4], [별표5]를 각각 별자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충청북도중앙도서관란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흥덕구'로 하고, 중원도서관란중 '주덕면'을 '주덕읍'으로 한다.

②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흥덕구'로 한다.

③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청주시'를 '청주시 상당구'로 한다.